제삼자에 의한 설비 파손으로 인한 비용 청구 시 회계처리

의 회사가 제작한 설비에 대해 아무 관련없는 A업체에서 설비와의 충돌사고가 발생해 해당 설비 중일부 파손되었습니다.

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A업체에서는 공제조합 등 보험을 통해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보상을 해주었고, 회사는 파손된 부분을 타 업체를 통해 수리를 하였습니다.

수리비용은 약 3천만원, 보험청구수령액은 약 5천만원일 때 수리비용 3천만원에 대해 외주비 등의 비용처리가 아닌 보험수령액과의 상계가 가능한가요?

K-IFRS 1037호 문단 53~58 변제에 대한 기준서를 적용하여 상계처리해도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.

ΑĪ

귀사의 의견대로 변제에 대한 기준서를 적용하여 상계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.

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 문의

☐ 22년 12월 31일 현재. 1주택이며

세대주: 배우자(소득없음)

세대워 : 근로소득자

21년 10월 5억 이하 아파트 분양받아 주담대 실현(상환기간 40년)했고, 22년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와 배우자 이름으로 워리금 상화을 했습니다.

이럴 경우, 세대원(근로소득자)이 22년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무의 드립니다.

A

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신용장 개설시기 및 수입시 건설중인 지산의 계상 여부 문의

외국에 있는 수입처에서 설비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. (구입가 90만 유로) 수입처가 제시한 결제조건은 신용장 개설(100%)하고, 선적시 90%, 입고 검수 완료 후 10%입니다.

여기서 궁금한 점은 90만유로의 설비를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하고 싶은데,

신용장 개설일 or수입일 중 어느 일로 건설중인자산을 인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.

건설중인 자산도 자산항목에 해당하므로 기업회계상 자산의 인식조건이 충족하는 경우에 반영하는 것 입니다. 따라서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모두 이전되는 시점에 자산으로 반영하면 됩니다.

설계변경으로 금형 폐기 문의

당사는 자동차 부품업체로 카메이커에 납품하는 제품의 생산을 위해 금형을 제작업체에 의뢰하 고 금형제작에 들어가는데, 중간에 카메이커의 요구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고 해당금형을 사용하 지 모하게 되어 이에 대한 금형제작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회수할 예정입니다.

질문인 즉, 금형실패 또는 폐기하는 비용이 아니였다면 금형매출로 인식을 했을테데, 이 경우 폐 기금형의 제작비용 회수를 위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, 금형대 회수금-금형대 제작비 용의 차는 잡수인으로 계상하면 될런지 아니면 금형매출로 봐도 무방하지 여부입니다.

금형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금형제작비용을 보전받는 경우는 매출보다는 잡수입으 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.

등기수유권외

- 1. a회사 전화사채를 인수하고 주식전화청구후에 당사로 등기소유권이 넘어오는 날은 어떤것을 확인하나요?
 - 2. 전화사채 전화권가치포함 35를 전화하여 그 차액을 전화이익, 계정으로처리하고자 하는데 전 환이익이라는 계정과목이 있는지요?

1. 전화권 행사에 따른 등기소유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세무회계상의 내용이 아니므로 저희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.

2. 계정과목이란 법률이나 회계기준에서 규정하여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, 회사가 자신들 의 거래를 잘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 사용해도 됩니다. 다만, 전환권행사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은 애초 사채의 취득기액을 그대로 적용하여도 됩니다.

 $2023 \cdot 07 \cdot 12$ www.eAnSe.com 9